

# 다대도서관 건립(BTL방식) 의무부담행위 승인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이유

우리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민간투자방식(BTL사업)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의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#### ○ 도서관건립 개요

사업명	위치	부지면적	건물면적	규모
부산화명·다대도서관 건립	다대1동1548-14	1,657m <sup>2</sup>	3,090m <sup>2</sup>	지상4층 지하1층

#### ○ BTL사업 개요

(추정) 협약기간		사업비(백만원)		
건설기간	운영기간	총사업비	BTL한도액	예산
2008~2009년 (15개월)	20년	6,820	5,966	854

※ 예산 : 부지매입비 773백만원, 용역비 등 81백만원

#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, 제4조 제2호

#### 4. 검토의견

##### □ 본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은,

- 우리구에 꼭 필요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구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
- 본 건에 대한 검토방향은 적법성, 타당성, 향후 우리구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 등에 중점을 두었음.

##### □ 적법성 검토결과

-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「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」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
- 도서관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“고”목에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」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이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.

##### 《관련절차 이행현황》

- 2004. 11. 1 구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 득함
- 2005. 5. 4 부산시로부터 투자사업심사승인 득함
- 2007. 2. 7 문화관광부로부터 BTL사업승인 득함

##### □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결과

- 37만여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구의 공공도서관은 사하도서관 1개소에 불과하여 전국평균과 부산시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칠뿐 아니라  
(전국평균 : 인구9만명당 1개소, 부산시평균 : 인구 15만명당 1개소)

- 그 1개소도 규모가 작고,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다대지역 등에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- 또한, 도서관 건립을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,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TL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5년 4월부터 정부방침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·시비지원은 BTL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기로 되어있어 BTL사업방식만이 국·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.

□ 끝으로, 향후 우리구 재정에 미칠 영향은,

- 본 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관련 사업비만 59억원에 달하여 이를 BTL사업으로 시행할 시 도서관 건립이후 20년간 상환해야 하는 시설임대료와 매년 소요되는 도서관 운영비는 향후 우리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
- 앞으로, 민간투자자와 협약서 체결시 수익률 산정 등 제반조건이 우리구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

도서관 준공후 운영방법도 구 직접운영과 민간위탁운영의 장·단점과 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